

동양생명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본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동양생명보험 홈페이지(www.myangel.co.kr)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1899-4707)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1. 상품 주요내용

1. 상품명 : 동양생명 이율보증형보험 (만기: 1년, 1.5년, 2년, 2.5년, 3년, 5년)

2. 가입대상 : 퇴직연금 전용상품 (DB : 사업장)

3. 상품유형 : 원리금보장형 보험(무배당)상품

4. 만기지정방법 : 1년, 1.5년, 2년, 2.5년, 3년, 5년 중 상품 만기를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5. 예금자보호 여부

구분	보호여부	내용
DB	비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이율적용방법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 동 상품의 신규 상품 편입일(또는 만기 재예치일)에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율이 적용 됩니다.

- 확인방법 : 당사 홈페이지(www.myangel.co.kr, 공시실 → 퇴직연금 상품공시 → 퇴직연금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에서 확인 가능

- 이율계산방법 : 신규 상품편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보증)이율 적용

7. 만기재예치 방법

- DB제도: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재예치.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

8. 중도해지이율

상품 만기(이율보증기간) 경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관련법령 및 약관에 따른 특별해지의 경우 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중도해지(일반)	특별중도해지
사유 (세부사항 상품약관 확인)	만기 이전 상품변경 또는 계약해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의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적립금 차감)• 연금전환 선택(개인형IRP)
해지이율	공시(보증)이율 X 80%	없음(공시(보증)이율 100% 적용)

2.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구분	내용
<p>청약철회</p>	<p>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퇴직연금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 됨)</p> <p>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p> <p>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p>
<p>위법계약 해지</p>	<p>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p>
<p>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p>	<p>이 계약관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 관리 담당자, 콜센터(1899-4707),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yangel.co.kr)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p>

3. 상품설명 확인사항

구분	내용
상품설명 내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재설정,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핵심설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또는 재설정일)에 결정하며, 당사 홈페이지 공시를 통하여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미적용)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았고, 설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 합니다.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 합니다.
- 이 상품 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상품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명	(서명)	일자	
------	------	----	--